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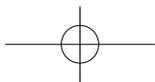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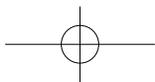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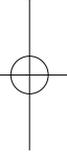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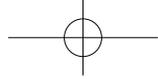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

고물상 +

창업하기







오늘날

환경산업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날이 쌓여가는 폐기물과 극심해진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새로운 기업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비전은

ESG경영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신규인재 발굴을 꿈꾸며 고물상창업 가이드 북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소책자가 환경과 기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운 인재들이 양성되는 기회의 통로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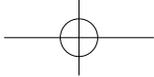
조금은 미숙하지만,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더 나은 네트워크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2023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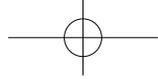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꿈꾸는

(주)비전 연구전담부서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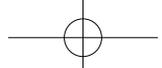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목 차

| | | |
|--------------------------------------|-----------------------|----|
| 1. (주)비전 기업 소개 | 회사개요 및 연혁 | 7 |
| | 사업영역 (고철, 비철, 폐기물) | 9 |
| | 인허가사항 및 주요 실적 | 12 |
| | 컨설팅안내 | 13 |
| 2. 고물상에 대한 이해 | 고물상이란? | 15 |
| | 고물상의 분류 | 15 |
| 3. 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 사업자 등록 방법 | 19 |
| | 사업자 등록 시 참고사항 | 20 |
| 4. 사업자용 통장 및 스크랩 거래 계좌 개설 |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제도의 개요 | 26 |
| | 스크랩 거래 계좌의 개설 방법 | 28 |
| | 스크랩 거래 계좌의 बैं킹 결제 방법 | 29 |



| | | |
|---------------------------------|--------------------------------|----|
| 5. 규제 및 허가사항 | 입지 조건 및 건축법 관련 기준 (지자체별 상이) | 33 |
| | 폐기물 관련 법규 및 신고 사항 | 34 |
| 6. 유통의 흐름과 지역별 분포 현황 | 유통의 흐름 | 42 |
| | 국내 철스크랩 지역별 분포 | 43 |
| 7. 장비의 종류와 가공 방법 | 선별·가공 과정의 필요성 | 52 |
| | 장비의 종류별 특징과 가공 방법 | 52 |
| 8. 철스크랩 등급별 분류 및 사진 | 철스크랩 분류 방법 | 56 |
| | 검수 원칙 | 56 |
| 9. 고물업의 경영과 관리 | 고물업의 현재 위상과 장·단점 | 64 |
| | 경영 관리의 틀 | 65 |
| | 비즈니스 모델 | 66 |
| 10. 운영자금 조달 방법 | 정부지원 및 용자 지원사업 활용법 | 68 |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1

(주)비전 기업소개



01 (주)비전 기업소개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회사 개요 및 연혁

(주)비전은 2008년 창사이래 1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한국철강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력이 입증되었다. 밥·꿈·나눔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사람이행복한기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나누며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을 추구한다.

고철에서 비철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세계로 무대를 확장하며 스크랩 분야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자 한다.



더 멀리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서는 비전

- 미래를 지향하며 멀리 바라보는 기업
-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을 지향하는 기업



생각하며 도전하는
창조적 비전

- 개인을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기업
- 기업의 성장을 향한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한 비전

- 이웃과 함께 세상과 함께하는 기업
- 기술의 깊이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기업

• 동반성장 대표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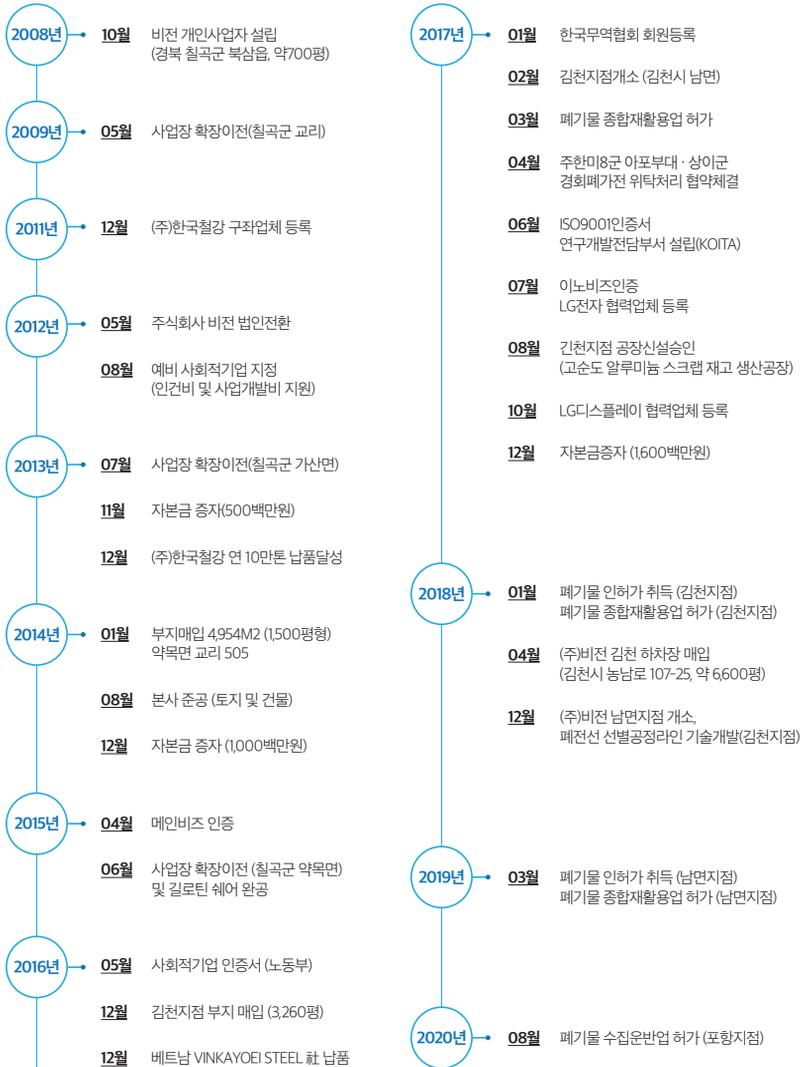


사회공헌



지역 환경개선

• 연혁



고철사업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철강자원의 재활용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며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한다. 철스크랩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과 폐자동차 등을 가공·정제하여 제강사에 원료로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당사는 각종 파·분쇄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여 폐자동차를 철과 비철금속으로 선별해서 자원화하고 국내 철원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위한 수입사업과 철원개발을 통한 저급 SCRAP의 자원화, 폐자재 에너지화 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철 RECYCLING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다.



- 철 스크랩 수거 및 가공 /
(주)한국철강 직납 라이선스 보유
- 절단 가공 및 압축가공 기술력 보유
- 조선소 철거, 공장 철거, 대기업 생산라인 교체현장 철거 노하우 및 해체전문팀 구성

• 제품정보



생철

제품 소재를 1차 가공시 발생하는 더럽혀지지 않은 고철로서, 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 원산지 및 발생처가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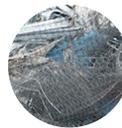
분철스크랩

각종 철 및 금속 소재를 가공하면서 생겨나는 금속 찌꺼기를 말합니다.



가공스크랩

각종 고철 및 폐철재를 압축가공기, 슈레드기, 길로틴등의 가공설비를 이용하여 일정규격의 사이즈로 가공한 고철을 말합니다.



중량스크랩

비교적 부피비중이 무거운 것으로 봉형강류, 기계구조물, 파이프류 등을 말합니다.



경량스크랩

비교적 부피비중이 낮은 고철로 생활용품류, 경량구조물 등을 말합니다.

비철사업부

비철사업부는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며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한다. 지역내 최대규모의 비철 파·분쇄 공정라인을 통해 고품질의 비철(순도 99%) 생산품을 일정한 크기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다수의 경북·대구업체와 협업하여 국내 원료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비철 파쇄 및 선별 기계 설비
- 비철 생산 제조 기술 보유
- 작업공정 후 순도율 99%
- 페동라디에이터, 폐전선, 알루미늄 재활용

• 제품정보



지역내 최대규모의 비철 파·분쇄 공정라인



구리스크랩
(동라디에이터)



구리스크랩(폐전선)



알루미늄 스크랩

폐기물사업부

폐기물사업부는 일상 생활 및 산업활동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
- 절단 가공 및 압축가공 기술력 보유
- 다수 지자체 및 대기업 폐기물 처리용역

• 제품정보

재활용기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R&D 투자로 환경재활용사업을 선도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전기전자제품류



비철금속

인허가 사항

최고의 시설, 숙련된 운영기술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 종합재활용업

| 구분 | 영업대상 폐기물 |
|----------|--|
| 허가일시 | 2018년 1월 26일 |
| 허가번호 | 제201800001호 |
| 처리시설 | 파분쇄 시설(220kW, 375kW, 300HP) |
| 영업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비철금속(CU, AL),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전선),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외 |



• 수집운반업

| 구분 | 배출시설계 |
|----------|--|
| 허가일시 | 2020년 8월 19일 |
| 허가번호 | 제336호 |
| 처리시설 | 기계식상차장치부착차량 외 |
| 영업대상 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51-03), 광재류(51-04), 분진류(51-05), 폐목재류(51-20), 폐유리류(51-30), 그 밖의 폐기물 총 32종 |



• 주요 폐기물 용역 처리 실적

최고의 시설, 숙련된 운영기술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구미 시민운동장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



한국가스공사



서남부권
해양 폐기물



진로고민 창업준비

고물상 창업의 첫걸음!
비전이 함께합니다.

창업컨설팅

- 전문가와 함께 취업-창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면대면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 취업-창업과 관련한 자기 이해, 정보 수집, 대안 선택 과정, 장-단기 목표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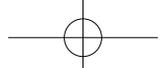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1. 컨설팅 유선-온라인 신청
2. 분야별 상담사 매칭
3. 컨설팅 일정 조율 및 확정
4. 컨설팅 진행

컨설팅 분야

- 다양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통한 취업-창업 준비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점검



1. 경영전략
2. 재무-회계
3. 인사-총무
4. 영업-유통
5. 생산-실무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2

고물상에 대한 이해



02

고물상에 대한 이해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고물상이란?

고물상은 고물을 사고파는 가게. 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직업도 같은 말을 사용한다. 흔히 냄마주이(폐지, 고철, 비철, 구리, 스테인리스,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는 사람들)가 개인 고물상에게 고물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개인 고물상들은 이러한 물품을 고물 도매상에 다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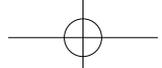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은 **자원, **금속, **환경, **철재 등의 이름을 달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고철업에 종사하다 보면 은근히 지역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는 간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물상의 분류

고물상은 단순 크기나 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최소 납기중량에 맞추어서 최소 납기횟수 이상을 납기 할 수 있는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품목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철 스크랩 고물상 유통구조
출처 : 철강자원협회, 산업연구원 등 자료 종합



1) 소상 (소규모 고물상, 수집상)

1차적인 수집기능을 하며 업계에서 '막고물상'으로 불린다. 지역에 있는 공장, 학교, 아파트 등 계약을 통해 고물을 매입하거나 방문하는 손님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수집한다. 이처럼 여러 경로로 철스크랩을 수집하여 중간상·납품상 등에 판매. 소량의 물건을 현금거래 하는 등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2-5인 규모 가족업체인 경우가 많으며, 동네, 공단, 교외 등에 분포한다. 필지 없이 트럭만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계량 증명소 혹은 거래처에 부탁하여 계근증을 출력 받아 거래를 하며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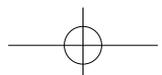
2) 중상 (중규모 고물상, 중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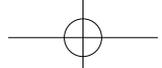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 고철상

고철만 전문으로 다루며, 생활고철인 잡고철부터 시작하여 주물 및 각종 정밀공업에서 깎은 뒤 나오는 분철까지 취급한다.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며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편으로 특성상 공단이나 도심지 외곽 등에 위치하며, 공단 내에서도 혐오시설로 꺼려지는 경우가 있다. 상위 거래처는 포스코 및 광양제철소가 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중상과 대상은 서로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파지상(파지 압축상)

파지상은 압축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집한 폐지들을 압축하여 블록 형태로 만들어 매매하기 때문이다. 집게차를 이용하여 소상으로부터 파지를 매입한다. 파지상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지 못하여서 제지업체에 납품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전체 공급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지상은 고물상에게 선금을 주고 한차에 얼마씩 깎으면서 거래한다. 소상 입장에서는 현금을 융통 할 수 있고 중상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물량 수급이 되므로 서로 WIN-WIN 하는 전략을 택한다.





- 비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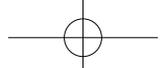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구리를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알루미늄을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납이나 주석 등 특수금속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등 금속 종류별로 고물상이 존재한다. 구리만 하더라도 A동, B동(상동), 하동, 전선, 캔디 등 분류가 다양하며, 전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비철상은 거래 주기는 길지만 고가치 품목 위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납품에 대해 크게 신경 쓰며 운영된다.

기타 고물상 종류 : 강통 압축장, 수지상, 헌웃상 등

3) 대상 (대규모 고물상, 납품상, 구좌업체)

다루는 품목 분류는 중상과 같으나, 거대한 부지와 최종거래처 입장에서라도 모시려 할 정도의 물량과 품질을 자랑한다. 물량이 많으니 분류를 세세하게 나누어 모아도 납품할 만한 양이 되고, 분류가 늘어나니 가격은 더 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품질도 올라가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업계 최상위포식자.

높은 자본력을 기반으로 1년 5억 이상, 중상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자본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상 중상과는 규모가 다르다. 대규모 수주 및 생산량을 기반으로 주로 지역의 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최소 수량 납기 제한과 최소 횟수 납기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상과 거래는 사실상 없다. 거래만 트면 중상에 거래하는 것보다 10%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소상 사장들은 대상과 거래하는 중상 이름으로 납기하기도 한다.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3

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03

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사업자 등록 방법

1. 세무서 방문 등록

※ 대리인 신청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 자필 서명 필요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본인 자필 서명 필수)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허가 사업인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인 이상 공동 사업: 공동 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일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구비,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2. 온라인(홈택스) 등록

- 제출서류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들은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두어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경우 작성 후 자동으로 생성됨)
 - ※ 휴대폰 어플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신청서 입력 (사업자등록 신고서)
- 제출서류 등록
- 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전송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는 등록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및 홈택스에 미리 문의하거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도움을 얻을 수 있음

※ 관할세무서 조회 사이트: <https://www.nts.go.kr/>
(전체메뉴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찾기)

사업자 등록 시 참고사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할 것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내는 것이 원칙
(여러 사업장이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

* 단,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본점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TIP!

1. 사업자 과세유형(간이, 일반)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공급대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이, 일반으로 나누는 과세유형을 잘 선택해야 한다.

나누는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0,000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다. (0.5-3% : 10%)
-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중 5-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단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음)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한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차이만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는 동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1. 인적사항

| | |
|-------------|------------|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
| 성명(대표자) | (주택) |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 FAX번호 |
| 사업장(단체) 소재지 | 층 호 |

2. 사업장 현황

| 업 종 | 주업태 | | 주종목 | | 주생산 요소 | | 주업종 코드 | 개업일 | 종업원 수 |
|--------------------|-------------------------|----------------|-------------------|----------|-------------------------------|----------------|----------|-----|-------|
| | 부업태 | 부종목 | 부생산 요소 | 부업종 코드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 | | | | |
| 사업장 구분 | 자가 면적 | 타가 면적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 | 임대차 명세 | | | |
| | ㎡ | ㎡ | 성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 보증금 | 월세 | |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허가 | []등록 []해당 없음 | 주류면허 | | 면허번호 | 면허신청 []여 []부 | | | |
|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판매 []입장 []유통 | | | | | | | | |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 자기자금 | 원 | | | 타인자금 | 원 | | | |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부 | |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부 | | |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
| 그 밖의 신청사항 | 확정일자 신청 여부 |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 | |
|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면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어신건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위 임 장 |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 | 본 인: (서명 또는 인) | |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자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계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를 수집 및 판매업 및 과세유통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일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5. 3. 1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록)

| | | |
|------|---|---------------------------|
|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처리기간 구월 (보정기간은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 | | |
|--------------|----------------------------|---|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층 호 | |
| 전 화 번 호(사업장) | (휴대전화) | |

2. 법인현황

|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자본금 | 천원 | 사업연도 |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 | | | |
| 내 국 법 인 | | | 외 국 법 인 | |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
| 영리 일반 | 영리 외부 | 비영리 | 국 가 자 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법인 기타 | 지점 (국·북·남·영) 연 락 사무소 기타 |
| | | | | | 여 부 |
| | | | | |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분할전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분할연월일 |
| 조합법인 해당 여부 | 사업자 과세 여부 | 공 익 법 인 | 외 국 | 국 적 | 투자비율 |
| 여 부 | 여 부 | 해당여부 | 사업유형 | 주무부처명 | 출연자산여부 |
| | | | | 여 부 | 외 투 입 법 인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 | | | | |
|--------------------|---------------------|-----------------|-----------|-------|--|
| 외 국 법 인 내 용 | | | | | |
| 본점 | 상 호 | 대 표 자 | 설 치 년 월 일 | 소 재 지 | |
| | | | | | |
| 관 리 책 임 자 | | | | | |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4. 사업장현황

| | | | | | | |
|---------------------------|---------------------------|---------|-----------------|---------|-------------|-------------------|
| 사 업 의 종 류 | | | | | |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
| 주업태 | 주 종 목 | 주업종코드 | 부업태 | 부 종 목 | 부업종코드 | 년 월 일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 | 사이버몰 도메인 | |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 | | 도면첨부 | |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자가 | 타가 | 여 부 | 성 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m ² | m ² | | | | | |
| 임 대 차 계약 기간 | | | (전세)보증금 | | 월 세(부가세 포함) | |
| 20 . . . ~ 20 . . . | | | 원 | | 원 | |
| 개 별 소 비 세 | | | 주 류 면 허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 인·허가 사업 여부 |
| 제 조 판 매 | 장 소 유 용 | 면 허 번 호 | 면 허 신 청 | 여 부 | 신고 | 등록 인·허가 기타 |
| | | | 여 부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 | | | | |
| 자산 계 | 유동자산 | 고정자산 | 부채 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총업원수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명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시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금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재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지 | |
| | 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신청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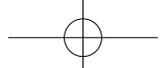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1부 5. 사업자가·동료·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자명세서(금자금·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출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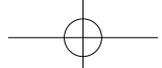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4

사업자용 통장 및 스크랩 거래 계좌 개설 부분





04

사업자용 통장 및 스크랩 거래 계좌 개설 부분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제도의 개요

과거 철스크랩 산업은 중간 유통단계에 철스크랩 수집에 있어 특별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처분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이용하여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잦았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고의적 탈루가 발생할 경우 탈루의 주범 사업체를 가려내지 못하고 거래한 정상적인 선량한 사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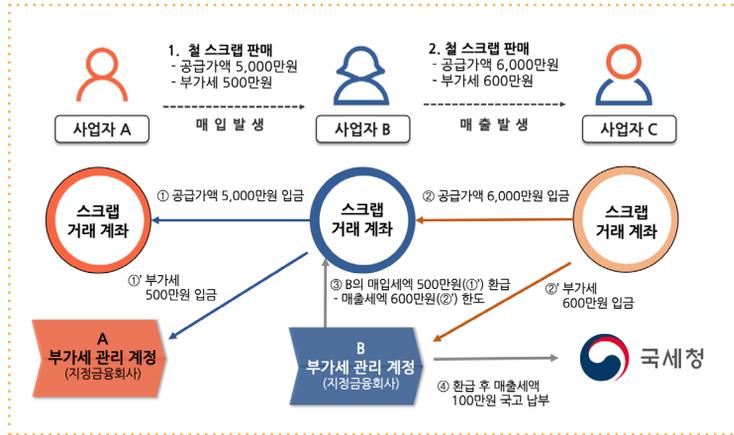
이에 조특법 제 106조의 9. 제 1항 제 3호에 의거하여 철 스크랩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급가액 부가세 결제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가 등장하였다.

사업자 간 철 스크랩 등을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주요 법령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관련 법안 | 법안 내용 |
|---|---|
| <p>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 조특법 제 106조의 9.제 1항 제 3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자 : 철 스크랩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 • 대상품목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전용계좌 : 공급가액·부가세 결제시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 전용계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시 거래상방 가산세(제품가액의 10%),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 부가세 지연 입금시 1일 0.03% 가산세 |
| <p>부가세 실시간 환급 조특법 시행규칙 제 48조 6 제 1항 *아래 계좌결제 흐름도 참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자가 매입처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사업자의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의 국고로 납부되어 사업자금 동결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분기 말 다음달 25일까지 국고 수납(국세청) |
| <p>전용계좌 납부세액 예정부와 특례 조특법 108조의 3 제 1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또는 스크랩 사업자에 대한 예정 고지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세액에서 금 또는 스크랩 전용 계좌로 국고 납부되는 세액을 차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국고입금 예정세액을 차감하여 고지서 발송 -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 조기 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래계좌에서 국고로 입금되는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
| <p>세액 공제 조특법 제122조의 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구리, 철 스크랩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를 위한 도입 - 세액 공제 금액 (2가지 방식 중 사업장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분 방식 : 전체 익금 손금의 합계액 중 매입자납부 관련 익금 손금 합계액의 전년대비 증가액 50%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공제 * 당기분 방식 : 전체 익금 손금의 합계액 중 매입자납부 관련 익금 손금 합계액의 5%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공제 |

[표 1]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 관련 법안

철 스크랩 매입자 제도의 납부 형태와 흐름



[그림 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계좌결제의 흐름도

스크랩 거래 계좌의 개설 방법

스크랩 거래 계좌는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라면 반드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철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이기 때문에 고철 업체는 상호간의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정된 은행에서는 이를 스크랩 등 거래계좌 혹은 부가세매입자 납부 계좌 등의 상품명으로 개설을 돕고 있으며 몇 가지 준수사항을 포함한다.

• 스크랩 거래 계좌 준수 사항

- ① 사업자는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②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 개설 가능하다.
- ③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양측에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 구분 | 신청인 구비 서류 |
|------------------------|--|
| 가입 지정 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 공통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통장 사용 인감 |
| 법인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인감 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 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 대리인 신청시 | <p>법인일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p> <p>개인사업자일 경우 :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p>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마다 가입 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개설 전 전화를 통한 질의 후 방문 • 일부 은행의 경우 banking 사용은 대리인 신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계좌개설만 가능) • 스크랩 거래계좌의 개설 및 거래한도 확대를 위해 매입 및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음. |

[표 2] 스크랩 계좌 가입 시 구비 서류

스크랩 거래 계좌의 बैं킹 결제 방법

은행마다 스크랩 거래 계좌를 이용하는 전용 계좌 이체 방식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बैं킹에서 '기업지원'이나 '기업별 맞춤 서비스' 등의 배너 내에 존재하며 거래유형은 **즉시결제**, **분할결제/변제**, **취소 거래**로 나뉜다.

• 즉시 결제

- 인터넷 बैं킹 등을 활용한 스크랩 매입자 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총합을 결제

• 분할 결제/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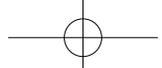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스크랩 매입자 거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할하여 결제/변제 하는 형태
- 우선적으로 공급가액만 보낼 수 있는 시스템
- 분할 공급가액 : 결제 시한 없음
- 분할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내 (분기 익월 25일 18시까지), 지연시 가산세

• 취소(감소)거래

-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매입자 거래의 취소 및 감소 형태 결제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전액 포함하여 취소
- 공급가액은 매입자의 스크랩 거래 계좌로,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 부가가치세계정으로 입금
- 거래 종료 후 사업자별 매입세액, 매출세액 산정 후 정산 및 환급 진행

• 지정 은행 이용 안내 (기업은행 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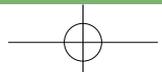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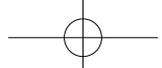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5

규제 및 인허가 사항





05

규제 및 인허가 사항 규제 및 허가, 이것만 알아두자!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입지 조건 및 건축법 관련 기준

고물상 업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오염물질 배출, 소음 공해 등)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달리, 갖추어야 할 다양한 허가 조건이 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중개사나 토목측량, 건축사 사무실 등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 전 미리 허가 조건의 부합성을 따져보고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 공단(다수의 공장이 있는 지역 포함) 인근 지역이나 마을에서 먼 산지 또는 마을에서 먼 계획(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22호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고물상은 입지 제한, 기반 시설 기준, 경관 기준, 위해 방지 기준, 그리고 용도지역 별 입지 가능 여부 등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사·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마다 입지, 시설 기준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별 조례 내용 참조할 것)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처리하거나 처리 방법이 선별 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의 경우 신고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5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 폐기물처리 신고 시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용도)
-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 공정도)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 폐기물 재활용(처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다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 폐축전자 및 폐변압기 (폐황산이나 폐질연유가 유출되지 않은 것)
- 페타이어, 폐가전제품, 페드럼 (내용물 유출 우려가 없는 것)
- 폐식용류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류를 전용 탱크, 용기로 운반하는 경우)
- 농업용 폐플라스틱 스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
- 폐의류 (생활폐기물에 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재활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고인 | ①상 호 (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 ⑤주소(사업장) | | |
| (전화번호:) | | | |
| ⑥업 종 | | | |
| 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 | | |
| ⑧재활용대상 폐기물 | | | |
| ⑨재활용 제품 등 | | | |
| 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 | | |
| ⑪일 처리능력 | | | |
| ⑫수질·온방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 | | |
| ⑬재활용 공정도 | | | |
| ⑭영업개시일 | | | |

| ⑮ 보관 시설 및 보관량 | 규격 (m) | 용량 (m ³) | 수량 (개소) | 보관대상 폐기물 | 허용보관량(톤) |
|---------------|--------|----------------------|---------|----------|----------|
| | | | | | |

| | |
|--------|------|
| ⑯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⑰변경 사유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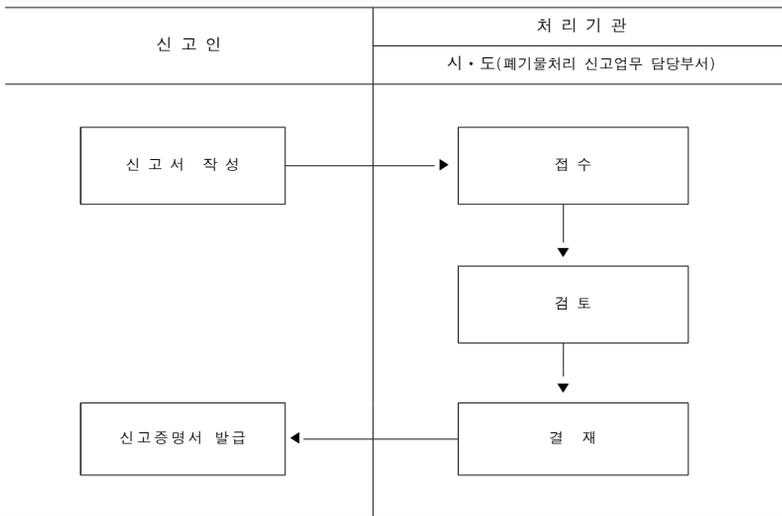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
|------|--|-----------|
| 첨부서류 | <p>1. 신고의 경우</p> <p>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p> <p>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p> <p>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p> <p>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p> <p>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p> <p>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p> <p>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p>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1.17>

폐기물처리(수집·운반)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고인 | ①상 호 (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 ⑤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⑥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 법 조항 | | |
| ⑦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 | |
| ⑧장비 현황 (수집·운반차량 종류, 톤수, 대수) | | | |
| ⑨수집·운반계획 | | | |
| ⑩영업개시일 | | | |
| ⑪변경 사항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⑫변경 사유 | |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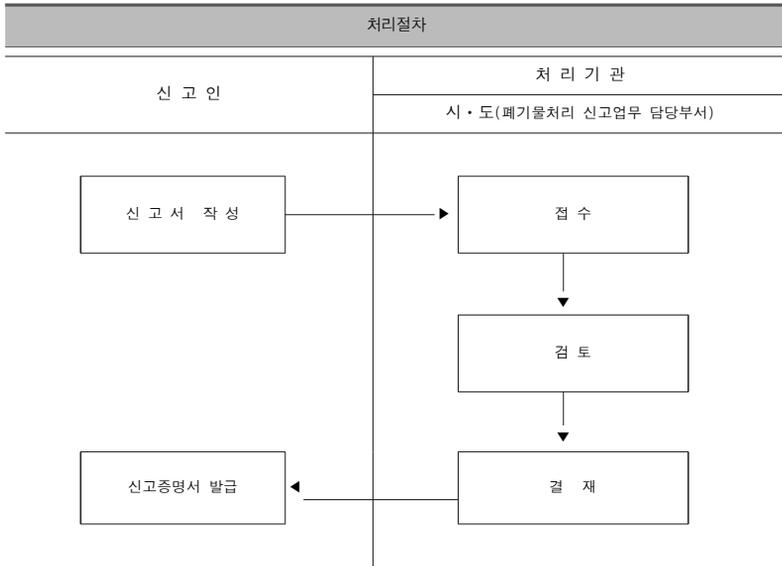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종류

| 구분 | 세부 내용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
| | 생활계 수집운반업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이상 고물상 신고) | 특별시,광역시 1,000㎡(302평) 이상 |
| | 시,군 지역 1,000㎡(605평) 이상 |
| 폐기물 재활용업 | 중간재활용 |
| | 최종재활용 |
| | 종합재활용 |
| 폐기물 처분업 | 중간처분업 |
| | 최종처분업 |
| | 종합처분업 |
| 기타 신고처리 | 기타 변경 신고 및 허가 |

•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기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기준에 맞게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한다.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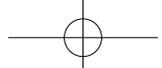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기 또는 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림 3]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6

유통의 흐름과 지역별 분포 현황



06

유통의 흐름과 지역별 분포 현황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국내 스크랩의 공급 구조

1) 유통 흐름

철 스크랩의 유통은 발생처→ 중간수집·선별정제·가공→ 최종소비 등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중소 수집상은 전국에 걸쳐 약 1만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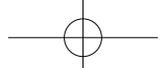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표 3] 유통 흐름도

2) 시중구매

시중구매란 철 스크랩의 최종 소비자인 제강사(주물공장 포함)가 외부(국내)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형태와 일련의 유통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시중 구매 규모는 2010년대 들어 연간 1,500~1,800만톤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중구매는 발생처에 따라 가공스크랩과 노페스크랩으로 구분되며 비중은 각각 30대 70으로 추정된다.

- 가공스크랩 : 산업 활동 과정, 주로 철강재를 가공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며 생철과 선반설이 주를 이룸. 따라서 산업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노페스크랩 : 건설 및 철거현장, 폐차장, 생활주변 등이 주요 발생처. 주요 등급으로는 중량, 경량이 해당. 노페 스크랩의 가격이 수집 의욕의 변수로 작용하므로 발생량은 시장가격 등락에 영향을 받음.

3) 자가 발생

고로, 전기로 철강사가 철강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스크랩으로,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비된다. 일반적으로 전기로는 조강생산량의 3~5%, 고로는 1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수입

우리나라는 총 스크랩 공급의 20%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4대 철 스크랩 소비 강국인 한국의 공급구조는 연간 총 공급량 3천만 톤 가운데 시중 구매 58%, 수입 21%, 자가 발생 21%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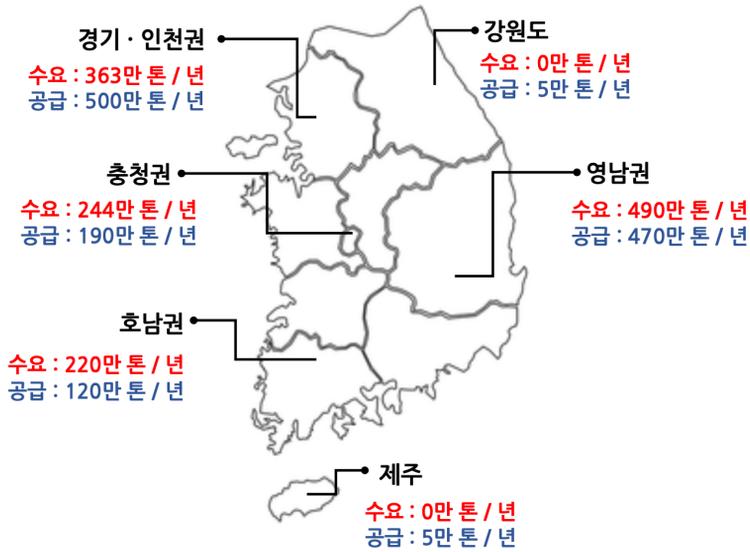
국내 철 스크랩 지역별 분포

국내 철강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수입스크랩 대비 국내 철 스크랩 우선 확보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철 스크랩은 지역 간 물류이동이 활발한 양상을 띄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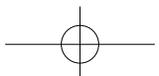
- 지역별 수급 차이로 인해 물류 이동 및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영남지역이 가장 가격 변동과 상승 시황을 주도한다. 반대로 경인 지역은 하락 시황에 뚜렷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지역이라는 특색을 가진다.
- 국내 철 스크랩 수급 여건은 경인/영남지역이 양호하며 호남/충청지역은 대형 전기로 업체와 특수기업체가 입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불충분하다. 이들은 주로 외부 유입을 통해 스크랩을 조달한다.



- 대형 전기로 업체 중심으로 철 스크랩 수급은 수입을 병행한다.
- 지역 간 철 스크랩 운반비는 구매가격에 반영되며, 차량별 GPS 장착, 상차지 관리 등을 통해 물류 이동 비용을 점검 집계하는 기술도 함께 발달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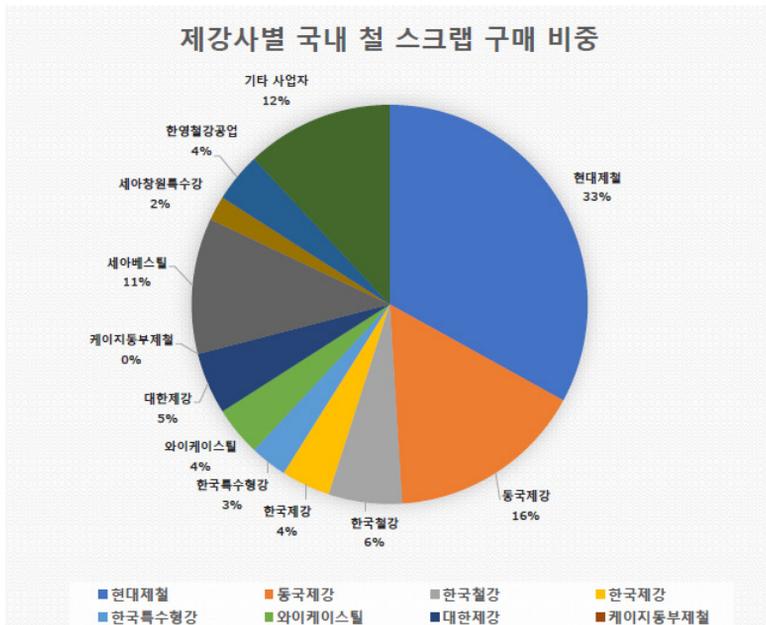
[그림 4] 한국 철 스크랩 지역별 발생량
출처 : 철 스크랩 수요/판매조사 (산업연구원)



지역별 주요 철스크랩 업체

1) 주요 수요처의 수급 특성 및 규제

철강 산업의 시장점유율은 7개의 대형 제강사 구매 비중을 단순 합산하더라도 7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구매 과점 시장이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 합산해도 49% 정도로 시장점유율 독과점이 크다.



[그림 5] 주요 제강사 별 국내 철 스크랩 구매 비중
출처 : 제강사 제출자료 (2018)

| 회사명 | 지역(공장) | 스크랩 사용량 (천 톤/년) | 주요 생산품 | 입고 규제 사항 (품목) |
|-------------|-----------------|-----------------------|--------------------|--|
| 현대제철 | 인천,당진, 포항,순천 | 9,930 | 형강, 봉강, 열연, 특수강 | 동스크랩류, 밀폐용기류 |
| 동국제강 | 인천/포항 | 4,570 | 형강, 봉강 | 비철류, 밀폐용기, 도금류 |
| 세아베 스틸 | 군산 | 2,500 | 단조, 봉강 (특수강) | 단조 및 합금강류, 밀폐용기, 비철도금류 |
| 포스코 | 포항, 광양 | 2,600 | 판재류 | Cr, Cu, Ni, Mo등 특수성분함유고철, 와이어류, 밀폐용기 |
| 대한제강 | 부산 | 1,110 | 봉강 | 압축밀폐용기, 장척류 |
| 세아창원특 수강 | 창원 | 780 | 단조,봉강 (특수강),STS | 샌드위치판넬압착품, 캔, 군용품, 모터블럭, 주물, 소각품 등 |
| 한국철강 | 창원 | 1,210 | 단조, 봉강 (특수강) | 밀폐용기, 가스절단품, 동 납 주석고철류, 체친 고철, 생철압축외 압축류, 슈레더고철 |
| YK스틸 | 부산 | 900 | 봉강, 단조, STS | 비철류, 절개되지 않은 드럼통, 밀폐용기, 이물질 혼입스크랩 |
| 환영철강공 업 | 당진 | 880 | 봉강 | 압탕류, 주석류, 체친 고철 |
| 한국특수형 강 | 함안 | 640 | 형강 | |
| 한국제강 | 함안 | 750 | 봉강 | 압축물, GS품, 차피, 대형물, 장척류, 타이어철심, 밀폐용기류 |
| 태웅 | 부산 | 240 | 단조용 주강 | |

[표 4] 국내 철 스크랩 주요 대형 수급사 특성 및 규제

2) 주요 제강사 및 납품 흐름

(단위: 천 톤, %)

| 구분 | 자가 발생 공급 (비율) | 시장거래 공급 | | | 국내 공급 소계 (비율) | 수출 (수출/국내 공급 비율) |
|-------|---------------------|------------------|-----------------|------------------|---------------------|------------------------|
| | | 국내 발생 (비율) | 수입 (비율) | 소계 (비율) | | |
| 2019년 | 6,352 (21.7) | 16,446 (56.1) | 6,499 (22.2) | 22,945 (78.3) | 29,298 (100) | 226 (0.77) |
| 2018년 | 6,254 (20.6) | 17,586 (58.1) | 6,449 (21.3) | 24,035 (79.3) | 30,290 (100) | 462 (1.52) |
| 2017년 | 6,594 (21.7) | 17,611 (58.0) | 6,161 (20.3) | 23,772 (78.3) | 30,367 (100) | 664 (2.19) |
| 2016년 | 6,096 (22.2) | 15,507 (56.5) | 5,847 (21.3) | 21,354 (77.8) | 27,450 (100) | 554 (2.02) |
| 2015년 | 7,247 (24.9) | 16,110 (55.4) | 5,745 (19.7) | 21,855 (75.1) | 29,104 (100) | 418 (1.44) |

[표 5] 최근 철 스크랩 공급 및 수출 현황
출처: 제강사 제출 자료

2019년 기준 철 스크랩의 국내 수요 29,298천 톤 중 21.7%의 제강 공정 자가 발생 철 스크랩의 재사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78.3%는 국내 구입 및 수입 스크랩으로 총당된다. 이러한 철 스크랩은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 활동으로 발생 되는 회수품으로서 '제조 및 생산' 과정이 아닌 '발생 및 수집' 과정에서 철강 업체로 공급된다.

위의 고물상의 과정처럼 철 스크랩은 수집기능을 담당하는 소상, 구매해 납품상에게 판매하는 중상, 다시 철 스크랩으로 구매해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구좌 업체의 단계로 유통되어 철강 업체로 이동한다.



[그림 6] 제강 업체 납품 구조 도식화
출처 : 산업연구원

납품의 주요 특징은 일명 구좌 업체 제도를 들 수 있다. 제강사는 일정 수준의 납품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철스크랩 공급업체를 자체 기준에 따라 구좌 업체로 선정, 그로 하여금 제강사에 철스크랩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제강사는 구좌 업체가 아닌 공급업체들과는 개별 거래를 하지 않으며, 다수의 구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스크랩을 공급받는다. 구좌 업체가 제강사에 철스크랩을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1) 중상 업체 하치장에 집적되어있는 스크랩을 구좌 업체의 명의로 구매, 제강업체에 바로 납품하는 방식 (=대납)
- 2) 구좌 업체가 중상 또는 수집상으로부터 수시로 납품받은 소량의 철 스크랩을 구좌 업체 하치장에 쌓아두고 있다가 제강업체에 공급하는 방식 (=구좌 업체 하치장 공급)
 - * 제강사에 납품되는 철 스크랩의 약 20-40%는 구좌 업체 하치장 공급물량, 나머지 60-80%의 물량은 대납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국내 철 스크랩 구매 현황표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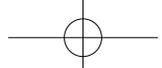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현대제철 | 5,303 | 5,128 | 4,561 | 5,082 | 5,280 | 5,530 | 5,498 | 6,075 | 6,089 |
| 동국제강 | 1,848 | 1,955 | 2,567 | 2,319 | 2,149 | 2,347 | 2,426 | 2,819 | 2,870 |
| 한국철강 | 813 | 863 | 788 | 780 | 798 | 928 | 996 | 1,037 | 1,011 |
| 한국제강 | 670 | 630 | 650 | 679 | 717 | 703 | 694 | 715 | 682 |
| 한국특수형강 | 827 | 852 | 780 | 873 | 599 | 437 | 469 | 547 | 584 |
| 와이케이스틸 | 1,253 | 847 | 793 | 792 | 697 | 677 | 668 | 723 | 699 |
| 대한제강 | 1,003 | 1,014 | 1,132 | 1,081 | 1,031 | 1,053 | 986 | 1,237 | 877 |
| 케이지동부제철 | 626 | 759 | 682 | 729 | 696 | 0 | 0 | 0 | 0 |
| 세아베스틸 | 1,287 | 1,671 | 1,218 | 1,589 | 1,723 | 1,622 | 1,604 | 1,938 | 1,937 |
| 세아창원특수강 | 496 | 567 | 480 | 506 | 434 | 308 | 254 | 302 | 340 |
| 환영철강공업 | 618 | 750 | 705 | 685 | 620 | 619 | 662 | 773 | 825 |
| 소계 (비율) | 14,744 (87.6) | 15,036 (82.5) | 14,356 (81.9) | 15,115 (81.1) | 14,744 (85.5) | 14,224 (85.4) | 14,257 (88.8) | 16,166 (87.3) | 15,914 (88.4) |
| 기타사업자 (비율) | 2,087 (12.4) | 3,186 (17.5) | 3,162 (18.1) | 3,526 (18.9) | 2,498 (14.5) | 2,422 (14.6) | 1,804 (11.2) | 2,011 (12.7) | 2,234 (11.6) |

[표 6] 국내 제강사별 철 스크랩 구매 현황

• 철스크랩의 제강사 구매, 납품, 검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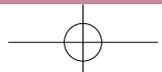
[표 7] 구매, 납품, 검수 프로세스 도식표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7

장비의 종류와 가공 방법





07 장비의 종류와 가공 방법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선별·가공 과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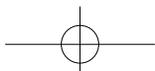
철 스크랩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는 일정 비율의 더스트가 혼입될 수 있고, 제품의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제조 시 비철,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과 결합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양질의 원료 납품을 위해서는 정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스트의 경우, 통상 유통되는 철 스크랩에서 더스트 혼재 비율은 약 1~1.5% 정도이다. 불순물은 구리, 주석 등 비철금속 성분이 품질 불량과 원가 상승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여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별·가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가공 설비의 종류

1) 압축기



[그림 7] ㈜비전 압축기 사진





가공 스크랩 등 얇고 공간이 많은 형태의 철 스크랩을 운반 및 장입에 편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유압 실린더로 압축하는 장치. 스크랩의 부피를 줄이는 동시에 특정 형상(사각 또는 원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설비이다.

압축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하고 장입성과 사용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물질 제거와 정제가 용이하지 않고 장입 시 용해성이 떨어지며 전기로에서 용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주요 가공 설비 중에서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요 업체들에 가장 보편화된 장비 중 하나이다.

2) 길로틴



[그림 8] ㈜비전 길로틴 사진

파이프, 건축 자재 등 크고 두께가 있으면서 길이가 긴 재료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장척(長尺) 스크랩을 알맞은 길이로 자르는 유압식 절단 설비로, 장척 형강류, 파이프류, 철판류 절단에 최적화된 설비처리량이 매우 많은 가공방식이다. 철 스크랩의 균일화에 의한 제강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스크랩 가공의 대표적인 설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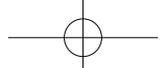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특히 길로틴은 프레스와 절단을 함께 가져 부차물에 의한 2차 공해 방지 효과가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료를 철판 상자에 장입하여 예비 압축하고, 누름판으로 절단하기 쉬운 형상으로 다시 압축한다. 그리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사용한다. 용이한 유지관리, 높은 에너지 효율성, 낮은 고장률 등의 장점을 가진 고성능 장비이다.



3) 슈레더

슈레더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여 철, 비철, 분진 등을 자력, 중력으로 회수하는장치이다. 폐기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된 철, 비철, 기타 물질의 복합물을 종잇장처럼 구기고 찢어, 이송 장치를 통해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철, 비철류, 분진을 선별해내는 설비이다. 복합 모재의 형상물을 파쇄 분리하거나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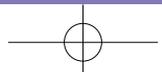
슈레더는 본체 외에 프리 슈레더(재료를 본체에 장입하기 전 잘게 파쇄하는 장치), 자력 선별기, 비철금속 선별장치, 더스트 분리장치, 집진장치, 컨베이어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장치이다. 철 이외 복합 스크랩으로부터 유가물의 회수 및 대량 처리에 효과적이어서 많이 보급되었다. 다만 더스트 발생에 따르는 처리비용의 상승 문제점이 있고 이는 산업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기때문에 환경문제 및 매립 비용으로 인한 스크랩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8

철스크랩 등급별 분류 및 사진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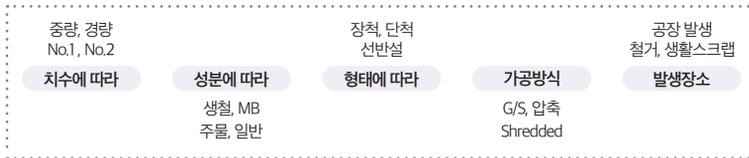
철스크랩 등급별 분류 및 사진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철 스크랩의 분류

1) 형태에 따른 철 스크랩 분류

철 스크랩은 치수, 성분, 형상, 가공 방식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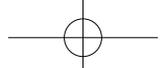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 철 스크랩의 형태별 분류 >

2) KS 기준에 따른 검수와 분류

철 스크랩 분류는 KSD 2101 표 4「재생용 강 스크랩의 분류 및 등급 기준에 의해 분류되며 KS의 철 스크랩 분류 기준에 의한 단일 검수로 진행된다. 검수 판정은 KS의 철 스크랩 분류 기준에 있는 등급별 치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제품 종류는 등급 판정의 참조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철 스크랩 검수 원칙

- 치량 1대에 2개 이상 상이한 등급이 혼적 시, 최저 등급을 적용하여 계근표 상 1개 등급으로 표현
- 동일 품목의 스크랩이라도「치수」에 따라 등급 변동
- 수요사(매입처)는 검수 판정 시 각 사의 로(고로/전기로)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 사항을 둘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 규칙에 따라 사전 처리 후 입고해야함
 - 밀폐 형태의 용기 및 탱크류 : 절개 및 절단
 - 파이프 등 내용 확인이 어려운 밀폐 용기류 : 절개 및 절단
 - 폐유, 폐유기용제, 페페인트, 페라커 등 유독성 드럼통 및 컨테이너 : 내용물 제거, 세척 후 절단

혼합물, 불순물 및 위험물의 유통

- 불순물
 - 더스트류 : 토사, 고무, 목재, 천 조각, 비닐, 유리,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 비철류 : 구리, 납, 황, 주석 등
 - 기타 : 연마분, 스케일 등
- 위험물
 - 폭발성 위험물 : 군사용 폭발물, 기체류 포함 밀폐용기
 - 이물질 부착물 : 석면 부착, 브레이크 라이닝, 애자, 주철관 이음부 납 부착품 등
 - 이물질 다량 혼합물 : 흙, 돌, 시멘트, 나무, 플라스틱, 스폰지, 고무, 타이어, 폐유 등
 - 유류 또는 화공 약품류 부착물 : 미 해체 오일 필터류 등
 - 도금 및 도장, 산화가 심한 물건 : 반짝이, 도금롤 등
 - 기타 : 전자기기 기관, 모터 코일이 포함된 모터류, 쓰레기성 오물이 함유된 스크랩이나 부도체 폭발성 위험물에 포함 되지 않은 위험물 (발화성 물질, 용기 내 얼음 및 액상함유 물질 등) 미확인 성분의 스크랩, 스케일 함유 스크랩, 비철 함유사항 (내규)
- 상기 사항 미준수시에 각사 자체 기준에 따라 감량, 퇴송, 입고제한 등 벌칙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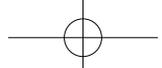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철 스크랩의 분류

| 구분 | 규격 및 치수 | 대표제품 종류 |
|--------|--|--|
| 생철 스크랩 | 생철 A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0m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간압연판 - 고로 및 전기로 발생 열연, 후판 및 편칭, 강편 - 사용 전 도금 및 도색 안 된 파이프 - 결속 상태 양호 선재, 코일 철 스크랩 - 절단 슬라브 스크랩, 사이드 스크랩 |
| | 생철 B 0.5mm≤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0m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간압연판, 박판 절단 및 편칭, 규소강판 - 결속 상태 양호 코일 철 스크랩 - 사이드 스크랩 등 |
| | 생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철 모재 압축. 가로, 세로, 높이 각각 600mm 이하 (가로, 세로, 높이 각각 허용 오차 10% 이내) |
| | 생철 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철 A 및 생철 B의 분류 해당, 길이 1,000mm 너비 500mm 초과하여 절단 및 가공작업 필요 생철 |
| | 모터 블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1,000mm, 너비≤500mm, 무게≤600Kg - 자동차 중장비 발생 모터블럭 |

| 구분 | 규격 및 치수 | 대표제품 종류 |
|--------|--|---|
| 노폐 스크랩 | 중량 A 두께 ≥ 6.0mm 길이 ≤ 1,000mm 너비 ≤ 500mm 무게 ≤ 600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전 직선철근, 단조 스크랩, 대형차량하우징, 대형차량 프레임 - 주철, 금형류, 폐주강, 북공판 - 사용된 ∅ 300mm 이상의 절개된 파이프 - 절개고압 가스통 (LPG통 제외), 판매용접 구조물 - 폐선박, 증장비 해체물, 대형차량 및 기차 휠 - 볼트 및 너트 (편칭 스크랩), 스프링 및 체인 - 봉강류 (원형강, 평강, 각강 등) - 형강류 (H, I, Γ, C, T 단 C형강은 제외) - 베어링, 빌레트, 시트파일, 압착강관 - 철도관련 (레일, 휠, 엑슬, 앵커, 숄더 단조 또는 압연에 의한 레일 받침판 등) 등의 철스크랩 |
| | 중량 B 3.0mm ≤ 두께 ≤ 6.0mm 길이 ≤ 1,000mm 너비 ≤ 500mm 무게 ≤ 600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철근, 철못 (사용되지 않은 것) - 소형차량 하우징, 소형차 휠 - 폐 선박 (중량A 이외의 것)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Plate) 형태의 스크랩 - 절개된 LPG통, 절개 양호한 주철관류 - 사용된 ∅ 50-300mm의 절개된 파이프 및 서포트용 파이프, 파이프연결 브래킷 - 각종 기계 및 부품류 등의 철스크랩 |
| | 중량 AL | - 중량 B의 분류에 해당하되 길이 1,000mm, 너비 500mm, 중량 600kg를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중량 A |
| | 중량 BL | - 중량 B의 분류에 해당하되 길이 1,000mm, 너비 500mm, 중량 600kg를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중량 A |
| | 경량 A 두께 ≤ 3.0mm 길이 ≤ 1,000mm 너비 ≤ 500mm 무게 ≤ 600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된 ∅ 50 미만 파이프, 철못 (기 사용한 것) - C형강, 앵글, 칼라강판, 와이어로프 - 소형차량 프레임, 스틸 밴딩, 변압기 케이스 - 스틸 유로폼, 스틸 폼(Steel Form), 농기구 - 건축 폐자재류 (창호, 도어 및 셔터, 철골, 창문 등) 등의 철스크랩 |
| | 경량 B 길이 ≤ 1,000mm 너비 ≤ 500mm 무게 ≤ 600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폐 샌드위치 패널, 철제 장난감, 우산대 - 머플러, 석도강판, 함석, 경량구조물, 철선, 철망, 카트리지류, 절개 드럼통, 자전거 - 생활용품 및 사무용 집기류 - 가전제품 케이스 (전자레인지, 냉온장고, 세탁기 등) - 사무용 집기 (캐비닛스 철재 파일박스, 책상의자 등) - 난방 기구류 (난로, 해체콘로 등) - 생활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류 (단, 식기류는 제외) 등의 철스크랩 |
| | 경량 L | - 경량 A 및 경량 B의 분류에 해당하되 길이 1,000mm, 너비 500mm, 중량 600kg를 초과하여 정제, 가공작업이 필요한 경량 |

| 구분 | | 대표제품 종류 | |
|--------|-------|---|-------------|
| 선반 스크랩 | 선반 A | - 기계 가공시 발생하는 넝쿨 및 Chip 형태의 스크랩, 두께≥1mm | |
| | 선반 B | - 주물품 선반 가공시 발생하는 스크랩 | |
| | 선반 C | - 기계 가공시 발생하는 넝쿨 및 Chip 형태의 스크랩, 두께<1mm | |
| 가공 스크랩 | 슈레더 A | - 생철을 모재로 하여 슈레더로 가공한 철스크랩 | |
| | 슈레더 B | - 비철을 함유하지 않도록 파쇄 및 정제한 폐차의 차피, 덴더, Clipping 등 - 가로≤200mm, 세로 및 높이≤100mm | |
| | 슈레더 C | - 경량 스크랩을 슈레더로 가공한 철스크랩 | |
| | 슈레더 D | - 캔을 모재로 하여 슈레더 가공한 스크랩 - 가로≤200mm, 세로 및 높이≤100mm | |
| | 길로틴 A | - 소재 특성이 경량 A 이상에 해당하며, 길로틴 시어로 절단 가공을 한 스크랩 - 폭≤1,200mm, 절단길이≤700mm | 철근말이 길로틴 |
| | 길로틴 B | - 소재 특성이 경량 B에 해당하며, 길로틴 시어로 절단 가공을 한 스크랩 | |
| | 압축 A | - 경량 A 이상의 모재로 압축한 것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 (가로, 세로, 높이 각각의 허용오차가 10% 이내) - 무게≤600kg | 철근 압축 |
| | 압축 B | - 경량 B를 모재로 압축한 것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 (가로, 세로, 높이 각각의 허용오차가 10% 이내) - 무게≤600kg | |
| | 압축 C | - 선반 B를 모재로 압축한 것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 (가로, 세로, 높이 각각의 허용오차가 10% 이내) - 무게≤600kg | 주철 압축 |
| | 압축 D | - 선반 C를 모재로 압축한 것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 (가로, 세로, 높이 각각의 허용오차가 10% 이내) - 무게≤600kg | 칩 압축 |
| | 압축 E | - 캔을 모재로 압축한 것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0mm 이상 800mm 이하 (가로, 세로, 높이 각각의 허용 오차가 10% 이내) - 무게≤600kg | |

[표 8] KS 기준에 따른 철 스크랩 분류
출처 : KS D 2101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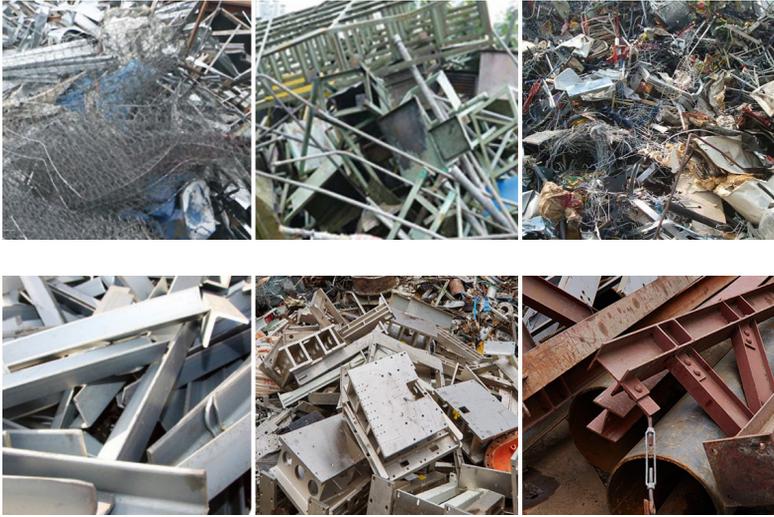
• 생철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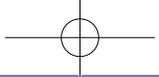
- 제품 소재를 1차 가공시 발생되는 더럽혀지지 않은 고철로서, 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 원산지 및 발생처가 분명한 것



• 노폐 스크랩

- 비교적 부피비중이 무거운 봉 형강류, 기계구조물, 파이프류 등의 중량스크랩과 비교적 부피비중이 낮은 생활용품류, 경량구조물 등의 경량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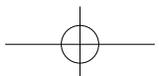
- 선반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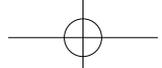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 기계 가공 시 발생하는 Clip 형태의 분철 스크랩



- 가공 스크랩

- 각종 고철 및 폐철재를 압축가공기, 슈레드기, 길로틴등의 가공설비를 이용하여 일정규격의 사이즈로 가공한 고철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09

고물업의 경영과 관리



09

고물업의 경영과 관리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고물상의 현재 위상과 창업 장단점

21세기의 고물상은 '냉마주이'에서 '소상', '중상'에서 '대상'을 넘어 '제강사 1차 협력사' 최근 환경이슈의 영향이 추가되며 '자원수집상'까지 위상을 넓혀가고 있다. 현금거래 위주인 업계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지간한 소상 업체를 인수하려 해도 억 단위 권리금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졌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영과 사업 성향의 차이이다. 과거의 가족 단위의 운영에서 기업적 성향의 운영, 실무적인 경영마인드와 운영방식으로 고물상에서 자원수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고물상은 곧 철강원료 산업으로 이어지고, 철 스크랩을 통한 철강 산업의 위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고물상의 위상이 오르면서 '폐자원은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3040 젊은 세대의 고물상 사업 진출 또한 늘고 있다. 인터넷에서 고물상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성공한 소·중상들의 노하우를 통해 폐자원 수집 기법을 전수하고, 이들이 수집한 폐자원을 모아 대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다. 고물상 창업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나열된다.

| 고물상 창업 장점 | 고물상 창업 단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기술, 고자본 없이 사업 가능 • 발품을 파는 만큼의 수입 보장 • 1인 가족 증가로 생활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 추세 • 최근 높은 정부의 재활용 사업 육성 의지 • 업사이클링 등의 고부가가치화, 전문화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매입 단가 • 중상 이상 창업에는 고액의 필요성 • 업체 간 알력, 수집품 도난 등 경쟁 • 3D 업종이라는 편견과 그에 따른 지역 민원 발생 • 현금거래 위주. 현금 유동성의 필요성 높음 |

[표 9] 고물상 창업 장단점

경영 관리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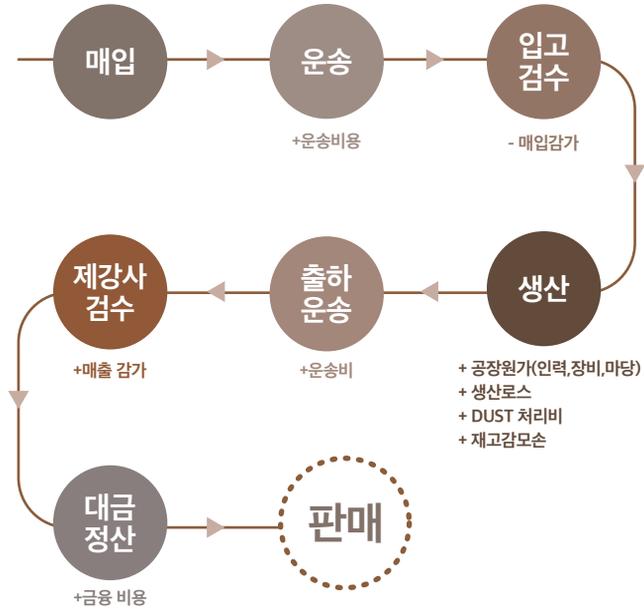
[그림 9] 철 스크랩 사업 경영관리 주요 요소

철 스크랩 경영 관리의 주요 요소는 가치관, 기본방향, 경영 목표, 전략, 공동 과제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각각 재무, 인력, 영업·구매·판매, 품질, 생산·출하·재고, 운송 등의 세부 요소를 가지며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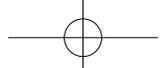
| 재무 | 인력 | 영업·구매·판매 | 품질 | 생산·출하·재고 | 운송 |
|--|---|---|---|---|--|
| 재무회계 자금관리 - 수입/지출 - 현금흐름 (Cash Flow) - 자본 - 차입 위험관리 - 신용관리 - 세무 | 인력확보 - 경리 - 영업 - 생산/정비 - 운송차량 인력육성 - 보수 - 후생 - 미래성장 | 시장 분석 판단 - 단기/장기 영업전략 - 적정재고 - 선금 - 경쟁사 분석 경제적 구매 제강사 관리 - 구매 검수부 - 제강사 전략 구매처 관리 - 발생처, 소상, 중상 - Family | 구매/감량 - 품목별 관리 판매/감량 - 등급별 관리 검수 기준 숙지 | 입고 / 검수 생산수율 DUST 관리 상차방법 발생원가 관리 생산 효율 관리 계중 관리 보안 관리 | 운송차량 효율 - 자차 (가동률 증대) - 지입차 - 용차 |

[그림 10] 철 스크랩 경영관리의 세부 요소

• 철 스크랩 비즈니스 모델



[그림 11] 철 스크랩 사업의 비즈니스 흐름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10

운영자금

조달 방법

10

운영자금 조달 방법

한눈에 보는 고물상 창업하기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1) 창업기반지원자금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및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중소기업 포함(시니어기술창업)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용자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구분 | 용자 조건 |
|------|--|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구분 | 용자 조건 |
|------|--|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대출금리 | 2.0%(고정) |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 기 타 |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용자결정 후 대출 |

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용자조건

| 구분 | 용자 조건 |
|------|--|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1)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용자조건

| 구분 | 용자조건 |
|------|--|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 (필수, 중진공 수행)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 라.용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2.공통사항> 라.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1)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해외관제재 피해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2)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3)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용자조건

| 구분 | 용자 조건 |
|------|------------------------------------|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관련 사이트 안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https://www.konetic.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gepa.kr/>)
 - 기업마당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
 - 경상북도 칠곡군청 홈페이지 (<https://www.chilgok.go.kr/main.do>)
 - : 환경관리과 담당 업무 별 직원 연락망 외 환경 분야 관련 정보 조회
 - * 지자체별 업무 담당 기관 및 부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할 것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 온라인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세금 관련 정보 조회
 -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index.do>)
 - :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